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4. 21 선고 2020나6866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기석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

담당변호사 안세환

변 론 종 결 2022. 4. 7.

판 결 선 고 2022. 4. 21.

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0. 27. 선고 2019가소43550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2,19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9. 2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

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D(이하 ‘이 사건 회사’라 한다)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소재 ‘E 리조트’ 건설공사 중 경량철골 부분 공사 및 일부 세대(F동, G동, H동~I동 총 16세대)에 대한 바닥단열재 공사(이하 ‘C타입 바닥공사’라 한다)를 도급받아 2018. 6. 13.부터 2018. 11. 18.까지 공사를 완성하였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, 제1심 공동피고 C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.

다. C은 2018. 8. 14.부터 2018. 8. 22.까지 및 2018. 9. 11.부터 2018. 9. 22.까지 원고 소속 일부 인부들을 동원하여 경량철골 부분 공사 및 C타입 바닥공사와는 무관한 다른 세대의 바닥단열재 공사(‘A타입 및 B타입 바닥단열재 공사’, 이하 ‘이 사건 공사’라 한다)를 하였고, 원고는 그 인부들에게 해당 근무시간을 포함한 인건비를 지급하고, 식대 등을 지출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, 을 제2 내지 4, 7,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피고는 C과 공모하여,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와는 무관한 이 사건 공사에 원고 소속 인부들을 동원하였고,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인건비 등 합계 22,195,000원을

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고, 피고와 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22,195,000원을 지급받았다.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,195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 요지

C이 원고 소속 인부들을 무단으로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, 이 사건 회사로부터 22,195,000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, C과 돈을 나눠 가진 사실 또한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다. 판단

갑 제2 내지 4, 7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 소속 인부들을 무단으로 동원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에 원고 소속 인부들이 동원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1) C이 작성한 2019. 7. 14.자 사실확인서에는 ‘피고가 원고 소속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고,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 소속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받아 피고와 나눠 사용하였다’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, C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‘처남 J을 인부로 허위 등록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00만 원을 피고와 나눠 가진 사실은 있으나, 원고 소속 인부들의 인건비 22,195,000원은 이 사건 회사가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, 이를 피고와 나눠 가진 사실이 없으며 원고 소속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전하지 않았거나 한 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각 공정마다 말한 적은 없다’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, C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.

2) C과 이 사건 회사의 이사 K 사이의 2020. 1. 13.자 통화녹취록에는 C이 K에게 “피고로부터 ‘아는 사람들 불러서 깔아보라’라는 말을 듣고 4명이서 일을 하다가 마감 날짜가 촉박해 원고 소속 인부들을 동원한 것인데, 피고가 원고 소속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

말라고 한 사실은 없고, 노임은 인부들에게 100% 지급이 됐다. 2019. 7. 14.자 사실확인서는 자세히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한 것이다.”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.

3)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, 피고가 매일 아침마다 C과 함께 인부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, 그 자리에는 이 사건 공사에 동원된 원고 소속 인부들도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, C이 ‘작업 지휘 자체는 도면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했고, 만약 피고가 현장을 다녔다면 위 인부들이 원고 소속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장에서 피고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현장에 왔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’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원고 소속 인부들이 동원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4) J은 원고 소속 인부가 아니어서 원고가 그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바 없고, J에 대한 인건비는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였으므로, C의 진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J에 대한 인건비 3,000,000원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지출로 인한 것이지 원고의 지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피고 또는 C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22,195,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강병훈, 판사 이서윤, 판사 조약돌